# 「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5월 2일

나. 발 의 자: 김민성 의원 (1인)

다. 찬 성 자: 김근한, 김낙관, 김영태, 김원섭, 김재우

김정도, 박교상, 박세채, 소진혁, 신용하

양진오, 이상호, 이정희, 이지연, 장미경

장세구, 정지원, 허민근 의원 (18인)

라. 회부일자: 2025년 5월 7일

마. 상정일자: 2025년 5월 15일

제2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김 민 성 의원

#### 나. 제안이유

O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에 따라 관련 사

항을 반영하고 복무조례 개정으로 소속 공무원들의 복리후 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고자 함.

## 다. 주요내용

- O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 가산 개정 (안 제9조 및 별표3)
-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규정 신설(안 제10조의2)

#### 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,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재 환

#### O 본 조례안은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('24.7.2.)에 따른 세부 운영 기준 등의 시달사항을 우리의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- 개정조례안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재직기 간이 2년미만인 경우 유사경력이 있을 때 연가 가산 2일이 었던 현행규정을 5년 미만인 경우 유사경력이 있을 때 연가 가산 3일로 개정하였음.

- 또한,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제를 신설하여 국가직공무원 과 지방직공무원의 차별을 해소하였고,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음.
- 각 조항은 최근 개정된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, 상위법령과의 법적 일관성 및 안정성을 위해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됨.
- 본 개정안은 공무원들에 대한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자기계발과 후생복지 제도의 향상에 의의가 있으며, 다만 휴가 일수 확대에 따른 대행자 지정 철저 및 업무연찬 등업무공백의 최소화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5. 토 론 요 지: 생 략
- 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- 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